
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8472호)
2017.12.12.공포 내용 중 식품접객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

제36조(<u>조리사</u>를 두어야 하는 식품 접객업자) 법 제51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이 영 제21조제 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 리·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.	제36조(<u>조리사</u>를 두어야 하는 식품 접객업자)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”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 리·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 업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 른 <u>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 리사</u>를 두어야 한다.
[전문개정 : 2017.12.12.] [시행일 : 2019.12.13.](제36조)	